

제176회 영등포구의회  
2013년도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2013. 7. 5.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 1. 경 과

의안 제223호로 2013년 6월 24일 김길자의원 외 4명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생활여건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복지지원 확대를 위하여 지원 대상자를 추가 신설하여 지원 대상을 넓히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확대 신설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안 제2조제5호)
- 실업, 화재, 사고, 사업실패,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갑자기  
어렵게 된 사람(안 제2조제6호)

##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가족 지원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따른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추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 주요내용을 보면  
지원대상을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실업, 화재, 사고, 사업 실패,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갑자기 어렵게 된 사람에게 지원 하는 규정을 신설함.
- 저소득대상자의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주민과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주민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생활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그 밖에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제명 및 관련 용어를 정비한 것임.

# 관 련 법 령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3조(보장비용의 부담 구분)** ① 보장비용의 부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국가 또는 시·도가 직접 수행하는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은 국가 또는 해당 시·도가 부담한다.

2. 제19조제2항에 따른 급여의 실시 비용은 국가 또는 해당 시·도가 부담한다.

3. 시·군·구가 수행하는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 중 제42조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은 해당 시·군·구가 부담한다.

4. 시·군·구가 수행하는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 중 제42조제3호 및 제4호의 비용(이하 이 호에서 "시·군·구 보장비용"이라 한다)은 시·군·구의 재정여건, 사회보장비 지출 등을 고려하여 국가, 시·도 및 시·군·구가 다음 각 목에 따라 차등하여 분담한다.

가. 국가는 시·군·구 보장비용의 총액 중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를 부담한다.

나. 시·도는 시·군·구 보장비용의 총액에서 가목의 국가부담분을 뺀 금액 중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70 이하를 부담하고, 시·군·구는 시·군·구 보장비용의 총액 중에서 국가와 시·도가 부담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부담한다. 다만, 특별자치도는 시·군·구 보장비용의 총액 중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부담한다.

② 국가는 매년 이 법에 따른 보장비용 중 국가부담 예정 합계액을 각각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그 과부족(過不足) 금액은 정산하여 추가로 지급하거나 반납하게 한다.

③ 시·도는 매년 시·군·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국가의 보조금에, 제1항제4호에 따른 시·도의 부담예정액을 합하여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그 과부족 금액은 정산하여 추가로 지급하거나 반납하게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산출 및 정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 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초과 보장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2.2.1]